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택배기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1제1항제1호가목 중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
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제104조의11제1항제3호 중 “배달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제11호라목에서 같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을 “배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제104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 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 험자의 범위) ① ----- ----- ----- ----- -----.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1. ----- ----- -----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 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 계사	가. ----- 제83조제1 항제1호에 따른 -----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 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 로 하는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 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 분류에 따른 그 외 <u>배달원인</u> <u>사람으로서</u> <u>택배사업[소화물</u> <u>을 집화(集貨)·수송</u> 과정을 <u>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u>	3. ----- ----- ----- <u>배달원으</u> <u>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u> <u>에 해당하는</u> ----- -----

이하 제11호라목에서 같다]에
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
는 사람

<신 설>

<신 설>

4. (생 략)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
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
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
는 사람만 해당한다)

6. ~ 8. (생 략)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
는 강사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
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
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
다)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의 택배사업(소화
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
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4. (현행과 같음)

5. -----
----- 신용
카드회원 모집인

6. ~ 8. (현행과 같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강사

가. 「초·중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
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964